

第 10 回 臨時會

2004. 9. 1(水)

— 鷄龍市駐車場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—

檢 討 報 告

鷄 龍 市 議 會

專門委員 申 東 熙

檢 討 報 告

□ 改正背景

- 관내 유료주차장을 운영함에 있어,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지역여건에 부합되도록 신축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
- 주민 불만으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고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일정시간 이내 주차한 차량에 대해 주차요금을 면제해 주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

□ 主要内容

-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고시한 일정 시간 이내 주차한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개정(조례안 제3조 제4항 제7호)

(신·구조문 비교)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주차요금 및 가산금) ①~③ (생략)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경감할 수 있다 1~6 (생략) <u><신 설></u>	제3조(주차요금 및 가산금) ①~③ (현행과 같음)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징수를 유예하거나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~6 (현행과 같음) 7.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에 대해서는 고시에 의거 일정시간 동안 주차요금의 징수를 유예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

□ 檢討意見

- 본 개정 조례안은 관내 유료 주차장을 운영·관리해 오면서 도출되었던 문제점 등을 현실 여건에 부합 되도록 개선하여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는 한편,

어느정도의 주민 부담을 덜어 주려는 조치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되나,

-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는 일정시간을 조례로 확정하지 않고 시장이 별도 고시 하도록 규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이 필요하며

- 또한 “주차요금의 징수를 유예 하거나” 라고 표현한 부분은 동 개정조례안의 본래 취지와 부합되지 않는 표현으로 사료 되는 바, “징수 유예”가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들은 후 세심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 됨